

第22回達西區議會(定期會)

社會・都市委員會會議錄(附錄)

第5號

(條例案審查)

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事務課

日 時 1993年 12月 22日(水) 午前 11時

場 所 小會議室Ⅱ

目 次

1. 大邱直轄市達西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案
2. 大邱直轄市達西區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3.
제출자 : 달서구청장
(지역교통과)

1. 제안이유

-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가 93.8.10 공포됨에 따라 주차장법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로 정하여 자동차관련 각종 세입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효율적인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을 도모 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주차장법 제21조의2

3. 주요골자

- 세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 과태료 징수금
- 시의 보조금

○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차입금의 상환
-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4. 조례안 : 별첨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2.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3. 시의 보조금
4. 시의 교부금
5.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6. 법 제24조의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8. 기타 잡수입

제 3 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출
2. 차입금의 상환
3.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련된 필요 경비
4. 기타 주차관련 사업 소요 경비

제 4 조(보조 또는 응자)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응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응자금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조(잉여금의 정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 6 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제 7 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 8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징수되는 수입으로 한다.